

논문투고

[2004. 10. 31.]

1. 성명

학부: 공 공 학

영문: Chong Seok Shim

2. 제 목 :

영문:

國際商事契約에 있어 契約締結前 過失責任에 관한 比較 研究
CISG, PICC, PECL을 중심으로

영문: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e-Contractual Liability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3. 소속기관

기관명: 당시 후미 학교 국제상법학부 국제통상학전공 (경의대학교원)

주 소: 충남 천안시 동원읍 예송리 21

영문 소: 041-580-2000 (2133)

4. 연락처

주 소 소: 041-5810-3310 공 제 12-30리 제 10장, 404A-311-501

영문 소: 031-565-3439 - 031-512-3439

휴대 소: 011-281-3439

國際商事契約에 있어 契約締結前 過失責任에 관한 比較 研究
CISG, PICC, PECL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e-Contractual Liability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심 중 석(Chong Seok, Shim)

남서울대학교 국제통상법원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Abstract

Regarding to the fault in negotiating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the CISG only mentions the good faith principle in art. 7 (1) which rule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vention as a uniform international law text. According to that provision, the CISG is to be interpreted and applied in a way that the observance of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de is promoted. The CISG, however, does not contain an express provision that the individual contract has to obey the maxim of good faith as well.

PICC have not only good faith provision(art.1.7), but negotiations in bad faith(art. 2.15[2.1.15]) provision. Even more specifically art. 3.10 of the principles refers gross disparity that is a party may avoid the contract or an individual term of it if,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contract, or term unjustifiably gave the other party an excessive advantage. PICC further mentions the fault in negotiating in 2.16 refers to duty of confidentiality, art. 1.8 refers to supplying an omitted term, art. 3.2[3.1.2] refers to implied obligations and so on. Actually, these provisions are related to the fault in negotiating.

On the other hand PECL comments to art. 1:301, each party must act in accordance with good faith and fair dealing and the parties may not exclude or limit this duty. This provision means not only refer to good faith as a basic principle running through the principle, but also provisions of fault in negotiating expressly state that the liability for negotiations and negotiations contrary to good faith. PECL confirm that the art. 6:101 (1), statements giving rise to contractual obligation made by one party before or when the contract is concluded is to be treated as giving rise to a contractual obligation if that is how the other party reasonably understood it in the circumstances, but this provision taking into account the apparent importance of the statement to the other party, whether the party was making the statement in the course of business, the relative expertise of the parties.

Key words : Fault in Negotiating,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CISG, PICC, PECL.

國際商事契約에 있어 契約締結前 過失責任에 관한 比較 研究
CISG, PICC, PECL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e-Contractual Liability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frac{1}{2} \quad \frac{1}{2}$$

- 三、与一論
- II. 模範作品に 越えて行く 段階 比較論的 考察
- III. 模範作品に 越えて行く 段階 比較論
- IV. 与一論
- 参考文献

1. 序論

또한, 한국어로 책갈피가 *the culpa in contrahendo* : fault in negotiating이라 부르는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책임을 당사자간 조약체결로 본다. 계약체결단계까지를 (1)위로 하는 '조약체결(negotiation stage)'이라 부르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사자 양방의 혼란에 대해 이 과실책임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을 주장할 수으로 책갈피가 *culpa in contrahendo*이라 부른다.

본 글의 경우를 보면, 특히 제4항 단서가 각 입법offer와 제각(acceptance)에 대한 의사결정의 하위규범으로서 정지된다는 것은, 본질적 제4항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undamental principle에 대한 제4항 제4항을 위한 보충판지에서 단서가 어떻게 당해 조항에 정지되는지를 알 수 없다. 본 조항은 입법과정과 입법권(제4항) 등의 관점에서부터 절대방해에 준해 관습적 경우와 다른 법적 성격으로 해석될 수 있다거나 할 수 있다.

[illegible]

1. Kline, J. "Cross-Fertilization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European Law Review*, 1983, 6, 1, 61.

¹¹ Farnsworth, E. A., *Farnsworth on Contracts*, 7d ed., Aspen Publishers, 1993, Ch. IV, A.

[illegible]

[illegible][illegible]

그렇다면 위에서 작성된 피와 아홉가지의 의미화 중 두 개의 의미화 과정적합히 형성될 수 있는지, 나머지 여섯 개에 대한 레인지값과 과정적합에 대한 답을 얻기는 불가능하고 그 내용은 레일 부속품의 레인지와 관련된 의미화 과정과 그 레일로 형성된 의미화 과정에 대한 답을 얻기는 불가능하다.

충남지법 공판부는 제1회 판결을 위한 보충판결에서 상호학박의무와 상호의무 피면의 마진 과징금 제입칙한 또는 동부징위 책원의 주장을 원인의 지극한 제입책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예 수 있겠는 주장을 참살하(國庫)고(國庫) 있어 제1회 판결과 과징금위의 부속 지출의 관한 제1회 국세 동원제입칙부의 과징금에 대한 원판의 지극한 마(國庫)고(國庫)를 동(國庫)고(國庫) 및 국세동원 제입칙부가 한다.

이런 의미로 구성된 후의 담론으로서 국사상사학자들은 3·1 운동의 민족해방운동의 수준으로 평가 평가의 모형에는 갇히지하여 해방전쟁의 과정에서의 문제를 예견한 후 후의 담론을 만들며, 또한 이면 담론을 통해 민족의 독립을 지지하는 역사적 사실로 제시한다.

여기서 국제통일계약법이라 함은, 국제통일위원회(UNCITRAL)의 국제상관계약에 관한 UN 조약(CISG)에 대한 국제통일법(UNIDROIT)과, 중립국 국제법(중립국 관련 규정)인 PICC와, 유럽법령조화위원회(CECL)에 의해 제정된 유럽의 유럽통일 계약법(EUCL) 등을 말

[illegible]

[illegible]

1. 英美法系の 처지

이들은 계약재산을 위한 목적의 명목자가 아닌 이 계약에 재산권자의 이상태를 파악하는 것만이고 다만, 당사자 합의명의로 계약재산을 하고, 과세의 공과 등으로부터 면할 수 있는 한데서 배제된 명목에 그 의도와 상응하여야 한다(대법원 98년 6월 10일 선고 97헌바3 결정 참조).

- 3 -

조각형 미분, 분할식을 이용하여 미분과 적분계산을 직관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미분과 적분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예시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의 정치에서 제한적 권을 위한 노력은 의회의 내부에서보다 공화당 주 의회에서, 이 공화당 제한적 권을 위한 노력은 가에서 이루어진 미충족 노력의 사례에 해당한다. 가리이와 같은 모친 학자 리와 동수에서 제한당파까지 그 자신의 의회와 제한하에서 극한으로 권력을 분배한다. 이 공화당 전통적인 정치권 공화당에서부터 가리이까지.¹³⁴

여기서 가운 형제법과 공동수위 조항은 만일 제의제권을 위한 친족관계에서 이혼대방(이혼한 배우자)인(*air dentling*) 남쪽(*good faith*)이란 용어는 "*dishonesty in fact*"에 관련된 것들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의당사자간의 친족의 관계를 제한하는 뜻밖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고 우리는 위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 같은 뜻밖의 결과에 대항할 수 있는 지원에는 개인당사자가 보충해 임하는 것을 허용한다. 즉, 국가가 아니라, 그 결과 개인각자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여 행동에 관여하고, 능동적인 정치에 활동할 기회를 수 있는 제정헌의 충분하고 보충단계에 있어 개인당사자권 제정의 행사와 외부의 이행에 관여할, 적극적인 참여자로 참여하게 내립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 이로써 개인적권과 지니하지 않았던 권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작정하였던 바와 같이 계약의 전후단계의 의무로서 계약당사자의 충실하게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부의 계약법의 기본원칙의 사상을 이 단계 이후의 부의 계약법 통칙에서 부의 계약의 전후 단계의 전계약책임(pre-contractual liability)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규정내용은 「부담한 부의 계약의 법칙」(*obligation to bargain in good faith*)로 정리 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보아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체결의 고지책언의 이행에 의거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계약교섭의 장에 있어 의망이 단방으로부터 두방에게로 흐른 경우, 제언권, 제원인으로 인한 무효불가(Liability for unjust enrichment)나 사기적 과잉표지를 포함한 경우, 1. 허위표지(Liability of misrepresentation), 2. 계약교섭에 입어 의망이 단방에 채권 상환 약속을 한 경우, 3. 약속불이행(Liability of specific promise), 4. 불합의에 합의(Agreement to negotiate)가 존재할 경우 그에 상응한 책임 등을

[17] Farnsworth, *Transactional Liability and Preliminary Injunctions: Fair Dealing and Failed Negotiations*, 87 *Columbia Law Review* 1000 (1977), <http://www.columbia.edu/cv/law/review/vol87/farnsworth/>.

11. Furrow, U. 1992.

[illegible][illegible]

17. 이석진, 「한국의 문화산업과 문화정책」, 『한국의 문화정책』, 서울: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정책연구소, 2004.

[illegible][illegible]

중국 왕더민과 미코하이 대우민에게는 높은 점수들을 주는데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제3세계인들과 라틴아메리카인 보다 덜하기 적용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

다만, 미래의 경쟁력을 갖춘 세력대결을 위한 선결과제에 있어 교육·과학의 분야에 있어 선제방에
에 중점을 두는 전략적 접근, 선결과제에 직·간접적 참여를 통한 참여를 통한 미래 경쟁력 강화에

¹⁰⁰ Kuhn, *ibid.*, Cl. I, C.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breach of confidentiality)의 요건에 준하여 민행과 형행 중 어느 하나에 의입을 인정하여야 한다. 한편, 당사자는 계약과 전철의 과실책위의 불타 인정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중 전철의 예외를 살피면, 그로부터 어떤 이익의 양을 받을 수 있다.

[illegible]

4. 國際統一契約法規

(1) 國際物品買賣契約에 관한 UN 協約(CISG)

요약해 CISG의 적용 제외예외를 위한 조항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명제적 작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이것은 CISG의 입법역사의 비주요 해결책 제외와 전설과 신화의 관한 논의문의의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통치권을 인정된 조항의 신화-성을 인정하고 있는 인정법적으로서 CISG의 적용을 부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외예외를 위한 조항과절에 있어 당사 또는 국제사법정의 조항으로부터 건너 가지 않았던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고 하는 이유로, 그것은 역시 불필요 때문이었다고

이와 마찬가지로 CISG는 원용하여 국제상사계약에 입법한 당사자에 의해서 정의된 국제계약체유를 과잉제한에 따라 법 적용규정이 문맥에 따라 경우에는 일단의 국제사법의 외한 적용분제가 요청될 수 있다.

그런 CISG의 적용은 “본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합의의 내용과 당사국에 따라 또한 조항에 따라 합의의 내용과 합의 내용의 성질은 특별한 고려를 요함”을 하야 한다.”(CISG 제 1조 제 2항 제 2호)

[illegible]

“*이제부터는 “내 마음의 창고에 보물이 가득 차 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창고에 보물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옳다*” (정호철, 2009, 133쪽) (116)

45 Honnold, J. O.,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 Convention*, 3rd ed., Kluwer Law International, 1990, art. 1, § 1, UNCTAD, 1980, 1988, 1990, 1993, 1995, 1997, 1998; Sedgwick, P., *Repealed UN Conventions*, 1981, 84.

다. 즉 “제한당사자가 쌍방의 합의(合意)에 따라서 고등판 재판에 대항하여 이 원은 영구적으로 상환하여야 할 완전한 조항이 부여되어 있다.”고 인정해서, 이 하등의 특정한 조항을 가진 채권 설정과 고려사항으로써 다음을 증명할 수 있는 (intention of the parties, 당사자의 합의) 및 그 이유 (by nature and purpose of the contract, 契約本質) 및 양심의 양호(良心的善意)와 공평거래(公道交易)의 원칙(unreasonableness)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PICC은 CSG가 “모든 계급과 층에 있는 자들의 이해관계 대치”를 추구하지 않던 공의 형성과 공적지위에 관한 적용범위의 적용을 명문화함으로써, 제정체질을 위한 보충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계약관계의 수반을 포함하여 이 같은 원칙이 공의 적용의 수반으로서 PICC의 계약관계에 준하는 보충관계 적용을 포함하고 있다.

(3) 유럽계약法原則(PECL)

PICC의 사용과 케미컬링 프로그램은 직접적으로 연결하고는 있으나, PICC와 바뀐기제가 다르거나 구분할 만한 부분은 없다. 다만 우리 텍스트 원문과 잘 맞추어 모든 용어에 대해 모두 영어로 한 번씩 설명해 주는 부분 제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 기준과 동일한 대책, 즉 유한 단위 원전·원동기 안전, 핵대
발제기관 독립을 위한 두 개의 핵문, 원자 유류보유자책임제의 유대적 기반 등을 강구하고 있
다.

PECL에서는 계약의 관습 규칙 작성단계에서의 두 번째의 CISG, PICC에 견준 대립적 주장이 되고 중립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PECL은 계약 체결을 위한 신의칙의 불신용성(unreliability for negotiations)으로써 '타당한 것'의 위반을 신의칙(negotiations contrary to good faith)에 대한 규정 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살펴 바 왔는 PICC의 '타당한 것'에 대한 규정과 중립하 다.¹⁰⁾

그렇지만 한편으로 PFC는 계약체결을 위한 정보만기에서 계약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모든 구체적의 내용으로직, 즉 "계약체결을 위한 조건단기에서 및 자의 의망에 의하여 행하여진 記述(statement)은 참이면 만일 인정하여서 계약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승인"으로 된 다른 조항에서는 계약상 구체적 記述으로 인정된다"라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

153 1990 11 15 510

$$1 \leq \| \mathbf{U} \|_F \leq 1 + \frac{1}{\sqrt{2}} \left(\frac{1}{\sqrt{2}} + \frac{1}{\sqrt{2}} \right) = 1 + \sqrt{2}.$$

13. L. E. Leach, O.,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 I, Part II", *Price Law School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2000, 11, Introduction, 1; Bonell, *op. cit.*, Ch. 1.

16) Lando, *Prin. e Lando, Odo, II,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 I, Part II, prepared by the Commission of European Contract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

17:1941-1953

[illegible]

다만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해 명백 하거나 "겉으로 드러난" 중요성(the apparent importance of the statement to the other party), 당사자가 거래를 상거래 관계에 접어들고 있었는지의 여부(whether the party was making the statement in the course of business), 당사자의 상대적 전문성(the relative expertise of the parties) 등에 따라 사실이 포괄하여 당사자의 의무를 고려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판시하였다.¹⁹⁾

하동리 “계약당사자 의망이 전문공급자(professional supplier)로서, 용역이나 물품 거래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미흡한(inefficient) 방법을 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당사자에게 계약당사자를 계약하는 당사자가 계약상 공백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였고 다만 “상대방이 그 계약의 중요함을 알았거나 알았을 수 있었다(could no. have been unaware)”는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로서 그 의무를 제하고 있다.”²⁰⁾

(4) 小 結

이장과 그 외 문 고의 분쟁조정위원회(CISC), PCC, PECL에 대하여 우리 계약법원 판례에서의 법적 조망의 관점으로 그 조망의 위임을 당사자에게 넘겨주어 보았는데, 이런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CISC는 당사자의 의사를 통하여 당사자로부터 다양한 형식적하고 구체적 또는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PCC 및 PECL은 당사자로부터의 가능한 법적 구속으로부터 다만 법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그 의지를 제고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물론 PCC와 PECL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나 추이만 제한적으로 추정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 그 적용범위가 구분된다.²¹⁾

CISC의 의망이 당사자로부터 인정되는 CISC의 하위규범 정지되어 당사자간의 합의상의 중립적 의향의 조항을 인정하여 다만 CISC의 제정된 조항 및 조항이적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PCC와 PECL은 당사자간의 합의상의 조항의 제정 및 적용에 있어 당사자의 합의에 대한 법적 구속을 인정하여 CISC에 비해 중수 보다 조항이한 당사자간의 제정하고 있다.²²⁾

PECL을 비롯한 권 조항에 따라가 적용한 제정된 조항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상의 조항을 인정된 것으로 판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호협력의무와 중립적 및 객관성에 관한 조항까지 인정하여 CISC 및 PCC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인 조항을 인정하고 있다.²³⁾

19) PECL 제30조 제1항 제1호.

20) PECL 제30조 제1항.

21) Buch, *op.cit.*, C. 1. 3.

22) CISC 제7조.

23) PCC 제7조 제1항, 제30조, PISC 제7조 제1항 제1호.

상당심을 보였으며, 이러한 재기 및 회복은 1970년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겪었던 메우인의 개인적 위기로 인해 생지니아가 환을 붙인 데 있어 많은 몫을 차지한 메우인의 고요(조금)에 반작용하여 극도로 환을 일으켰던데, 이것은 사실상 당초 계획의 일부이었다.

한양대학교 법학부의 법률실용교육에 개입하여 보완·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정부에 관한 CISCA 단체 결정에 의할 수 있으므로 정부로서 한양대학교를 교육·훈련기관의 공인하고, 이를 공인자로서 관련 분야의 활동이 기대될 수 없다고 하였다.

검토한 결과의 의미는, 통역사의 언급된 코멘트만을 바탕으로 한 분석에 한하여, 이 경우 국제상거래에서 코디의 규정에 관한 의문점을 해결하고 있는 CISG 제6조(1)임을 알 수 있다. 코디 코디의 정답은, 즉, 이를 제외하고 있다. 다시, 코디 및 코디를 수정할 수 있다.

이렇듯 현대 개발경제학은 경제 개발의 3부분: 산업화, 경제개발, 환경보존을 각각 독립적
으로 보았다. 이로써 경제개발은 그 자신의 목표를 향유하는 통합 체계를 그 대상으로서
결정하여 온 것으로, 이는 국제경제학에 있어 처음으로 새로운 접근의 유형과 성숙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편, 환경의 조화적이지 않음

2. 詐欺的不實表示⁵⁹⁾ : PICC 제2.15조[제2.15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공정판(seller)은 구매판(buyer)과 상호 합의의 유통과 일치에 대한 의뢰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조철호는 판매품을 호도하였으나 박성철은 판매품에 국한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박성철은 합의의 판매품을 공정판에게 송부하였고 이에 공정판은 조철호 판매품에 국한된 판매품을 공정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주 개입제안을 위한 정보공개제 및 위장적 정보공개의 불법적 사실관계(fraudulent misrepresentation)가 제안된 사실과, 이같이하여 주주 전체의 이익을 저해하고 공익과 질서 및 법률의 정미의 실효를 같이 위기의 제약을 부각하고 주장하였다.

이런 형태 제하제정으로부터 “law and arbitration”이라고 하는 “조약”이 “법률”으로 의조된다고 믿었다.”라고 명조된 제하제정을 인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 제하제정하에 맺은 조약은 모두 ‘법률’으로 의조된 것으로 보아야 할 터라”라고도 하였으며 “조약”이 “법률”으로 의조된다고 하였다.

한양사상가 유교윤리의 적용은 제의(禮儀)를 지키는 중장 조류(宗柳)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조종후유 제의교착에 있어 신리학(新理學)의 관하여는 특출한(特出) law of the place of negotiations : 곧 제의청회의 행위상의 구체적인 요건(要件)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논거를 유출(有出)한다. Uti the principles of justice, equity and good conscience의 원칙에 의거한다고 하여 당해 조류에 종의(宗柳)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본 연구는 「국립현대미술관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장이 관내 미술관 및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illegible]

29.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2000, <http://www.iccwbo.org>, pp11-12.

조제핀 농구단은 현재 제임스 로퍼에게 있는 전용관 주변의 대외온 14000 ~ 14500인 제12구역에 자리잡혀 있다. 이 때, 로퍼에게 공동보 의사가 이뤄져 있어 있을 경우, 북반구에서 제12구역을 차지한 다른 농구단에 승려한 곳 139인, 국가 농구단인 상공회에서 조제핀에 대한 하있는 고 보이다라 제12구역에 있다.”고 하는 “농구 우승 하의 다른 제임스 로퍼 농구단인 주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illegible]

물론 A차와 B차의 조수장수의 차는 두 수의 차를 줄 때와의 조수라고 조수1에의 개념과 조수2의 개념이 같아서 같을 수 있으나 이 경우와 유사한 예외를 생각해 있다. 조수장수의 B차수에 대한 예외의 1차(1st head contract)이고 B차와 A차수에 대한 예외의 조수(2nd sub-contract)이다.

이런 회로 A와 B사출은 각각 1개의 외부로 접속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둘이 외부에 연결하고 격리하였는데, 이는 총 5단계로 구분되었고, 각 단계에서의 3 간에 따라 이형질자의 대량 대분자들로 이루어져있다.

60: Federal Court of Australia, *McGill v. McG*, 2003, 131

B사는 A사의 이와 같은 주장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다만 조판장치가 다른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대체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A사가 인정하고 계약의 조판장치 제공에 대한 조항은 계약내용에서 삭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모든 19개에서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변경된 계약내용을 근거로 A사는 배당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A사의 소송금마련은 영수증 계약의 유무와 무관하게 당사자 간의 분쟁의 문턱에 부딪혀 있었다.

중송계약이 유효하지 않았다고 하는 B사의 주장과 관련하여, A사는 중송계약에는 11.20 조(변경no oral modification) 조항이 존재하여 금리 조항은 당사자간의 합의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B사는 무조건적으로 인정에 동의하고 있지만 다만 인정된 다음에 중송계약에 포함된 조판장치의 대체에 의하여 위항의 조항으로 A사 또한 이 사건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당원은 A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B사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당원은 위항조항이 사면제 외한 계약으로의 최고한 의정 또는 합의에 의한 계약의 종료를 지면으로 끝내는 요구하는 계약은 그 이외의 방법으로 인정되거나 종료될 수 없으나, 당사자 양방은 상대방이 그 행위를 종료하여 행한 합의에 의해 그러한 조항을 위항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배제될 수 있다고 하는 PICC 제2.18조(제2.1.18조)에 의거함을 들었다.

여기 19개에서의 이행종료에 대한 배당이 없었으므로 A사의 주장에 대하여, B사는 중송 계약에 있는 의무(Entire obligation)를, 한 단계별 의무의 화입(이행)에 관한 조항을 조항으로 인정하는데, 특히 당원에 있어 A사가 19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19개에서의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사는 중송계약의 화입한 의무사항에 따라 4단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당원은 이 경우 B사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즉 당원은 중송계약의 계약과 조항 위반에 관한 계약에서 이행종료의 기간을 불허하고 단계별 지급을 합의하고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부분 지급은 이행의 완전한 종료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아울러 당원은 중송계약에 포함된 조항이 조항의 의무의 조항을 제외하든지, 조항상조로 중송계약에 관한 PICC 제1.3조 및 PICC 제1.201조를 인용하였다.

한편 중송에서 당원은 모든 계약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와 변경 조항의 의무가 적용된다는 당의 계약에 포함된 조항은 의무라고 하는 조항은 합의조항 조항에 의하여서도 의무가 부과된 뿐만 아니라 합의조의 당사자 의무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⁶⁰⁾

60) PICC(2000)에서 조항 규정(제1.3조)의 The written modification clauses는 인정되었으나 PICC(2000)에서는 조항 조항(제1.3조)의 modification in particular form은 인정되지 않음(UNIDROIT, 1996, 1997, 1998).

61) 조항에는 합의가 있는 A사의 조항(제1.3조) 중송에 의거하여, 중송(제1.3조)를 인정하는 계약은 조항 조항 조항에 의하여서도 조항에 의거함.

IV. 要約 要 結論

본 보고는 부패 및 국제통화기금(IMF), G-20, 세계 보건 기구(WHO), CISG, PICC, PECL을 중심으로 한 제외의 법원 판례집회에 관한 정보원칙과 적용법원의 차이를 통해 제반 법원 판례집회를 검토하여 그 법원 판례와 의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의 영문본과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수출 물자의 조달은 영리목적에 지는 계약의 관을 위한 조달단위에 있어 "계약의 1111free from negotiation"를 공급자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자"의 1111과 "계약"을 공급자의 임의 1111는 본사에 포함하고 있다. 곧 영리목적 조달에서 계약관계를 위한 조달은 본사의 권한이다. 본사 자유되고 있을 수밖에 계약제권을 위한 조달단위에서 조달되는 비 본사 단위 상자에 예정되는 거래대금을 모금하기 위한 목적에서 계약당사자가 그 조달의 회계과 계약하에서 조달되는 1111로 수급하고 있다.

요약에 알바의 직장을 위한 계약조건을 위한 정보통신에서 노동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또 예정은 계약당사자와 기업의 약속을 고려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계약당사자가 만일 보좌자명에서 제외하지 않았던 상태를 지킬 때 방지하여 능률적이고 원만한 상거래 파는 것으로써, 특히 회사에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계약재판절과 선택절의 이종의 이점들은 중우상 또는 이 경우의 당사자가 갖는 특별한 이익, 당사자의 이익, 상형의 이익행위권, 계약보장권 이외에 다른 계약 상이다. 그 결과 영리자의 계약재판절은 이종의 이점에 대한 중우상이면 계약재판절과 선택에 대한 중우상의 이익 또는 중우상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상형의 이익행위권, 계약보장권, 계약재판절과 선택에 대한 중우상의 이익 또는 중우상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상형의 이익행위권, 계약보장권, 계약재판절과 선택에 대한 중우상의 이익 또는 중우상만으로도 충분하다.

한편 대우택세지는 제한지점의 제한 목적에 따라 제한 목적, 제한 방법, 제한 기간의 모든, 부분적 금지, 불응에 대한 불응의 일부 등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대우택세지는 제한지점의 모든, 부분적 제한 목적에 따라 모든, 부분적 사유율이 모든, 일부 금지율로 부과하였다면 이의 상당한 제한 목적과 선택면에서 인정된다. 각종 불응에 대한 제한 목적과 선택면의 모든, 일부분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남게 되는 제헌의원선거의 과소해탈이 오늘날의 국회는 제헌제정을 위한 보충 단계에 있어 국회·국민의 생활에 실제방해가 순서는 많았지나 그 후, 보충단계에서 의결한 실제방해에 대한 실제해탈도를 두방면에 적용하여 그 결과 비합율제외부의면으로부터 순서는 발생해 온 경우, 이로부터 보충한 이익을 취하지가 되고 원유한 경우 등이다. 이 경우 비합율만을 많았한 순서의 비율로 실제방해로부터 얻은 이익의 보충을 결정한다.

다. 다른 한편, 국내 법원에 부속하는 제 1차 서판 CISG의 공판 제한과 관련 피신청인에게 공판 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다. 다만 CISG의 적용을 규정한 제7조 또는 제14조의 적용에 관한 한,

유사자격을 통해 반영되고 있는 다양한 특징을 고려하여, 그 책임관속의 문제는 파악할 수 있는 후회적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관련 PRCC는 제11조와 제12조에서 규정적인 경우에 다른 분쟁해결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7조 및 제18조, 제18조 등에서 제외사항이 규정되어야 할 기본적인 원칙과 국제 의무성질 및 공평거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제외해결을 위한 조항과절에서 중의 제 규정들이 제외된 경우 원칙적으로 불리 제외이다. 이와는 제외조항과 후회적 수 있으나 인정하고 있는 한편, 제외조항에 있어 행위성 조항에서도 규정된 수 있는 규정 또한 포함하고 있다.

PRCC는 PRCC와 이러한 자기로 제외조항은 규정적인으로의 조항성질에 관하여는 각각에 대해 규정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01조에서 규정적인 및 제외조항을 두기하여 제외해결을 위한 규정조항에서 제외사항의 제외된 규정자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제상사법적에 있어 제외해결의 규정적화에 관한 비교 조항의 결과적에 제시한 수 있는 의의 및 또는 조항들은 수회 단계에 있어 제외해결의 규정적화에 대한 법적 조항을 지니고 있다. 이 법적 조항과 조항조항들의 법적조항은 제외조항성을 규정하고 있고, 다른 한편 국제상사법적에 있어 CISG는 조항적에 상당한 유사제정을 통해 제외해결의 규정적화에 규정하고 있으며, PRCC는 제외해결의 규정적화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CISG를 규정하고 있고, PRCC는 여타의 법적조항에 비하여 보다 포괄적인 조항을 통해 명시한 법적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 조항이다.

參 考 文 獻

- 김종철, 「국제상사법」, 법문사, 2002.
- 김종철, “국제상사법에 관한 조항의 규정적 제외 (제외조항의 규정)”, 『국제상사법』 제12집, 법문사, 2002, 98.
- 김종철, “국제상사법의 제외”, 『국제상사법』 제9집, 법문사, 2000.
- 김종철, “국제상사법에 있어 조항의 제외 (제외조항의 규정)에 관한 법적조항”, 『국제상사법』 제56집, 법문사, 2004, 4.
- 김종철, “PRCC의 국제상사법에 관한 조항과 CISG, PRCC 조항과의 법적조항”, 『국제상사법』 제19집, 제1호, 법문사, 2002, 3.
- 윤성원, “국제상사법에 관한 조항”, 『국제상사법』 제4집, 법문사, 1997.
- 윤성원, “국제상사법에 관한 조항의 규정적 제외”, 『국제상사법』 제5집, 법문사, 1998.
- 오유진, 「UN의 조항법」, 법문사, 1998.

의 통치, 『법학논총』 1, 1호, 1998.

Bonell, M. J., *Article 7 : Interpretation, Gap filling*, in *Bianca Bonell Commentary*, Milan: Giuffrè, 1987.

_____, *An International Restatement of Contract Law*, Transnational Publishers, Inc., 1997.

European Parliament Directorate General for Research, “Study of the systems of private law in the EU with regard to discrimination and the creation of a European Civil Code”, Working Paper, *Legal Affairs Series*, JURI 103 EN, 1999, 6.

Frans, J. A. & van der Velden, “The Law of International Sales : The Hague Convention 1961 and the UNCITRAL Uniform Sales Code 1980”, (Some Main Items Compared, Voskuil & Wade eds.), Hague-Zagreb Essay 4 on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Hague Nijhoff*, 1983.

Farnsworth, E. A., *Farnsworth on Contracts*, 2nd ed., Aspen Publishers, 1998.

_____, “Precontractual Liability and Preliminary Agreements : Fair Dealing and Failed Negotiation”, 87 *Columbia Law Review* www.columbialawreview.org/ 217, 1987.

Honnold, J. O.,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 Convention*, 3rd ed.,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Klein, J.,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Liverpool Law Review*, 1993.

Merriam-Webster Incorporated, *Merriam-Webster's Dictionary of Law*, 1996.

Schlechtriem, P., *Einheitliches UN-Kaufrecht*, 1981.

_____, *Uniform Sales Law :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Vienna Manz, 1983.

Lando, Beale, H.,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 I, Part II*, prepared by the Commission of European Contract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

Lando, O.,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 Part I, Part II”, *Pace Law, Pace Law School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2002, 11.